

2023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기부처명	관련페이지
1. 건설근로자공제회	2P
2. 공수 김용호 기부장학금	4P
3. 국민건강보험공단	7P
4. 국민연금공단	11P
5.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15P
6. 연암장학회	18P
7. 우미희망재단	20P
8. 유지웅 기부장학금	26P
9. 한국가스공사	27P
10. 한국교직원공제회	10P
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0P
12. 한국자산관리공사	31P
13. 한국토지주택공사	35P
14.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I)	38P
15.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II)	39P
16. DGB사회공헌재단	42P
17. KOSAF기부펀드(유형I)	47P
18. KOSAF기부펀드(유형II)	49P
19. 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	54P
20.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60P

1. 건설근로자공제회

1. 사업 목적

- 건설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535백만 원(100만 원 × 535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2023년 6월 말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22년도 또는 최근 12개월('22.7월~'23.6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 장학금 신청자와 근로자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번호는 신청 시 필수 입력 항목임
 - ※ 피공제자번호 및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적립일수 확인하기(빠른메뉴)→나의 정보조회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1666-1122」를 통해서 확인 가능
 -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퇴직공제금 기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근로자 제외(기부처 확인)
 - ※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기 수혜자, 협성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기부처 확인)
 - ※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재단 확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535명
-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100점)

- 동점자 처리기준: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 > 고학년** > 성적상위자 > 2022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자녀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자녀 > 연소자

*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가 소지자여야 하며, 기부처 최종 확인

**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함

- 비교: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2. 공수(空手) 김용호 기부장학금

1. 사업 목적

- 개인기부자 공수(空手) 김용호 기부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800백만 원(200만 원 × 100명 × 4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4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인 가정의 대학생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7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인원: 10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4개 학기('23년 2학기~'25년 1학기)
- 평가기준
 - (1차) 가계소득(30점) + 성적(70점), 1.5배수 선발
 - (2차) 자기소개서(100점) + 사회배려계층 가산점*(5점)
 - * 장애인, 가정외보호출신, 학생가장, 다문화 가정 등
 - ※ 자기소개서 심사위원(2인): 한국장학재단 내부 또는 외부 심사위원 2인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사회배려계층 > 다자녀 가정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 동점자 처리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제출서류: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가정 외 보호출신: 입소확인서(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등)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의 경우(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정, 기혼자 제외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대학생(기혼자 제외)

○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자 의사에 따름

참고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성장과정 및 가치관 등) (500자 이내)

2. 향후 학업계획(진로목표, 학업수행 계획 등) (500자 이내)

3. 국민건강보험공단

1. 사업 목적

- 강원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0백만 원(200만 원 × 25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강원도 소재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재(졸)업학기자 제외
- 신청자격
 - 강원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 신청 가능 대학은 참고1(신청 가능 대학 및 가산점 인정학과) 참조
 - 2023년 11월 중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가능한 자(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소재)에서 진행 예정)
 - ※ 기부처 사정에 따라 수여식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심사 결과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 장학증서 수여식 불참하는 경우, 2024년 1학기 계속 지원 탈락할 수 있음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 기준과 동일함
- 지원인원: 25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3년 2학기 ~ '24년 1학기)

평가기준

○ (1차)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가산점*(5점), 2배수 선발

*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계열 전공자인 경우 가산점 부여(참고1 목록 참조)

○ (2차) 자기소개서(100점) ※ 기부처 2인 및 재단 위촉 1인(내부 또는 외부) 심사

○ 동점자 처리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장자

※ 동점자 처리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참고 1

신청 가능 대학 및 가산점 인정학과(2023년 2학기 기준)

연번	신청 가능 학교	소재지	가산점 인정학과
1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릉시	-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언어재활상담전공, 언어재활상담학과, 의예과, 의학과, 임상병리학과, 중독재활학과, 치매전문재활전공, 치매전문재활학과, 치위생학과
2	강릉영동대학교	강릉시	- 간호학과(4년), 물리치료과, 사회복지과, 치위생과
3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시	-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치위생학과, 치의예과, 치의학과
4	강원관광대학교	태백시	- 간호과(3년제), 간호학과(4년제)
5	강원대학교	춘천시 삼척시	-(춘천) 간호학과, 약학과, 의예과, 의학과 -(삼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사회복지학과,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6	강원도립대학교	강릉시	-
7	경동대학교	원주시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관리학과, 보건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응급구조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치기공학과, 치위생학과
8	상지대학교	원주시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사회복지학과, 언어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재활상담학과, 제약공학과, 한방의료공학과, 한의예과, 한의학과
9	상지영서대학교	원주시	- 보건의료정보과, 사회복지과, 언어치료과, 작업치료과
10	세경대학교	영월군	- 간호과, 간호학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학과(전공심화)
11	송곡대학교	춘천시	- 간호과, 간호학과, 보건의료정보과, 보건의료행정과, 사회복지상담과
12	송호대학교	횡성군	- 간호학과, 방사선과, 방사선학과(심화), 보건행정과, 사회복지과, 임상병리과, 임상병리학과(심화), 치위생과
13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원주시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보건행정학과, 의예과, 의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재활보건학전공, 치위생학과
14	춘천교육대학교	춘천시	-
15	한국골프대학교	횡성군	-
16	한라대학교	원주시	- 사회복지학과
17	한림대학교	춘천시	- 간호학과,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부, 의예과, 의학과
18	한림성심대학교	춘천시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물리치료학과(전공심화), 방사선과, 방사선학과(전공심화), 사회복지과, 치위생과

※ 가산점 인정 예외여부는 기부처의사에 따름

참고 2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500자 이내)
2.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부장학금” 지원 동기(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4. 국민연금공단

1. 사업 목적

- 국민연금 수급자, 수급자의 자녀 중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50백만 원(150만 원 × 10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취약계층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또는 그 자녀
 - 노령연금 수급자 자녀
 - ※ 장학금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내역(가구원)에 반드시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장애일시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수령자 및 그 자녀의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 ※ 푸른등대 국민연금공단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100명
 - ※ [참고1] 푸른등대 국민연금공단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참조(대학소재지 기준)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2학기)
- 평가기준
 - (1차)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약 1.5배수 선발
 - (2차) 자기소개서(100점)
 - ※ 1차 및 2차 지역별 선발인원 적용(최종 2차 선발 시 지역별 선발인원이 미충족 될 경우, 기부처와 협의하여 미충족 인원은 2차 심사대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 자기소개서 심사 2인: 기부처 1인 및 재단 위촉 1인(내부 또는 외부) 심사
(블라인드 심사 진행 예정)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 동점자 처리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제출서류: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마감일 기준 지급내역 있는 경우, 수급자 인정 가능
 - ※ 장학금 신청자와 수급자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수급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팩스·우편) 등을 통해서 발급 가능, 연금수급증서 등의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함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참고 1

푸른등대 국민연금공단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인원

지역 구분	1차 선발인원(명)	최종 선발인원(명)
서울	35	23
부산	14	9
대구	6	4
인천	5	3
광주	6	4
대전	8	5
울산	2	1
세종	2	1
경기	24	16
강원	6	4
충북	6	4
충남	11	7
전북	6	4
전남	5	3
경북	11	7
경남	6	4
제주	2	1
합 계	155	100

※ '22년 행정구역별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 재적학생 비율 반영하여 배정

※ 지역구분은 대학소재지 기준 적용

※ 최종지역별 선발인원이 미충족 될 경우, 기부처와 협의하여 미충족 인원은 2차 심사대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참고 2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p>1. 국민연금공단 연금 수급을 통해 도움이 되거나 느낀 점(500자 이내)</p> <p>※ 유족·장애연금 또는 노령연금 가족 수급을 통해 도움이 되거나 느낀 점 기술</p> <p>※ 이름, 나이, 학교, 출신지 등 작성자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작성 불가</p>
<p>2.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500자 이내)</p> <p>※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p> <p>※ 이름, 나이, 학교, 출신지 등 작성자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작성 불가</p>

5.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1. 사업 목적

- 2022년·2023년 발생한 자연 재난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지역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 지원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40백만 원(200만 원 × 35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사직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2022년 및 2023년 발생한 자연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정의 대학생

*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연 재난은 아래 재난 상황 및 지역에 한함

해당 재난	특별재난지역
경북·강원 산불	○(경북) 울진군 ○(강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중부권 집중호우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 1동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강원) 횡성군, 홍천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태풍 ‘힌남노’	○(경북)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육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2022년 폭설	○(전북) 순창군 쌍치면
2023년 서부 등 산불	○(강원) 강릉시 ○(경북) 영주시 ○(대전) 서구 ○(충남)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홍성군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 함평군

- ※ 장학금 신청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피해사실확인서 상 피해자가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또는 본인이어야 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인원: 35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3년 2학기 ~ '24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동점자 처리 기준: 다자녀 가정 > 금융·보험전공*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 학과명에 '금융' 또는 '보험' 단어가 포함된 자
- 제출서류: 피해사실확인서
 - 심사 사항: 피해사실확인서의 ①피해자는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또는 본인이어야 하며, ②피해자의 주소는 특별재난지역 이어야 함. ③피해 일시는 아래 재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구분	경북·강원 산불	중부권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	2022년 폭설	2023년 산불
재난기간	'22.3월	'22.8월	'22.9월	'22.12월	'23.4월

-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을 방문하여 발급하며, 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됨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참고 **피해사실확인서 양식**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8.23>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피해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피해 내용					
대상	단위	피해 규모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 일시	재해의 종류
용도					
제출처					
위 사람이 소유(경작)하고 있던 재산에 위와 같이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읍·면장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직인</div>
※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6. 연암장학회

1. 사업 목적

-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52.5백만 원(150만 원 × 35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 또는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 * 장애인, 새터민, 가정 외 보호 출신, 한부모 가정, 학생가장, 다문화 가정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35명
 - 강원도 소재 대학 10명, 이외 지역 대학 25명
 - ※ 강원도 지역 선발 대상자가 10명에 미달하는 경우, 이외 지역에서 추가 선발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 ※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서류제출 필요 없음
 -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가정 외 보호출신: 입소확인서(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등)
 -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의 경우(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정, 기혼자 제외
-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대학생(기혼자 제외)
- 다문화 가정
 -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7. 우미희망재단

1. 사업 목적

-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및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100백만 원(200만 원 × 5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소속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 대학생
 - *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 ** 기숙사, 전(월)세 원룸, 하숙집, 고시원 등(단,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
 - ※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5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5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 가산점(15점)
 - ※ 다문화 가정 또는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대학생,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 가산점 부여
 - ※ 장학금 신청자와 가산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부모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 (필수)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 신청시작일('23. 7. 4.)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만 [참고1]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발 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선택) 다문화 가정(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선택)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선택)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상세)

○ 전(월세) 주거 유형: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자로 판단

○ 기숙사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심사 사항

-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 ②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 ③ '23년도 2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23년 12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 필요

* 대학생 명의 등본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참고 1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신청자 인적사항

- 이 름 : 홍길동
- 소속대학 : 기부장학대학교
- 학 과 : 장학학과

○ '23-2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사항 포함)

1. 임차유형(택 1)

전(월세)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기타 ()

2. 월 주거(예상) 비용(택 1)

20만 원 미만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 학기/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3.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등)의 임차인(택 1)

-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 본인 부친 모친
-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 본인 배우자

4. 기타사항

-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00시 00구 00로(예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한국장학재단 2층 인재육성장학부)
- 임대차계약서 주소(예정포함): 00시 00구 00로(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연세빌딩 24층)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예정포함): 20xx. xx. xx. ~ 20xx. xx. xx.

※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_____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	---

참고 2

하숙집 · 고시원 확인서 (예시)

하숙집 · 고시원 확인서

1. 하숙집 · 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소	연락처
	590415 - 2(예시)		
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소	연락처
	920319 - 1(예시)		
3. 하숙(입실) 현황			
하숙(입실)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하숙비(입실료)	월금 총 원	숙박비(입실료)	월금 원
		식대	월금 원
<p>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 · 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확인자 (하숙집 · 고시원 주인)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p>			
비고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참고 3

기숙사 입주확인서 (예시)

(제20 - 호)

○○○○○기숙사
입 주 확 인 서

성 명		학 교 명	
호 실	관 호	연 락 처	

상기 학생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기숙사에 거주함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기숙사 **관 장 (직인)**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8. 유지웅 기부장학금

1. 사업 목적

- 개인 기부금을 활용한 체육계열 우수 대학생 생활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백만 원(200만 원 × 5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체육계열 전공*이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 학과명에 체육 또는 스포츠 단어가 포함되거나 스포츠 종목이 포함된 학과명(예시: 태권도학과)
 - ※ 푸른등대 유지웅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5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9. 한국가스공사

1. 사업 목적

- 에너지 전공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320백만 원(200만 원 × 16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인 에너지 전공자*
 - * 신청자 학과명에 ‘에너지, 기계, 전기, 화학공학(화공), 토목, 건축, 전산, 자원’ 단어가 포함된 자
 - ※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16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참고]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참조(대학소재지 기준)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참고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권역	장학생 선발 기준 지역 (대학 소재지 기준)	선발인원(명)
대구	대구광역시	24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36
경북권, 강원권	경상북도, 강원도	25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도	25
호남권, 제주권	광주광역시, 전라도, 제주도	25
동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25
합 계		160

※ 지역별 선발인원이 미충족 될 경우 기부처와 협의하여 미충족 인원은 전체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10. 한국교직원공제회

1. 사업 목적

- 사범대, 교육대, 교원대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대학생의 생활비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200백만 원(200만 원 × 10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전국 사범(교육, 교원)대학 재학생
 - ※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사범대, 교육대, 교원대 재학생
 - ※ 단, 일반대학 교직이수과정 재학생은 제외함
 - ※ 2022년 푸른등대 한국교직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10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사업 목적

-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녀 중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60백만 원(150만 원 × 20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재(졸업)학기자 제외
- 신청자격: 산업재해 사망자 자녀 또는 장애등급 1~7급 판정 근로자 자녀
 - ※ 푸른등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 장학금 신청자와 근로자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 지원인원: 20명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3년 2학기 ~ '24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동점자 처리기준 : 산업재해사망자 > 산업재해 장애등급 고등급자 (1급→7급 순)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 증서 등의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12. 한국자산관리공사

1. 사업 목적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금융소외계층으로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자(또는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채무자 가정의 경제적 재기 발판 마련 지원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0백만 원(200만 원 × 5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또는 그 자녀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인 자
 -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또는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만 이용한 자는 제외, 자격 충족 여부는 부채증명원(필수 제출서류)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
 - ※ 장학금 신청자와 채무자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채무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5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100점) + 가산점(10점)
 - ※ 성실상환자 해당 시 아래 기준에 따른 가산점 부여(최대 10점)

성실상환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가산점	2.5점	5점	7.5점	10점

- 동점자 처리기준: 중증장애인(1~3급)중 장애인연금수령자 > 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4~6급) >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자 > 고학년(4학년 이상 4학년 간주) > 연장자(신청자)

※ 장애인 해당 여부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아래 제출서류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작성서류

○ 자기소개서(기부장학금 신청서)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서(500자 이내, 200자 이상 필수 작성)
(예시) 장학금 신청 사유, 장학금 활용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 등

※ 장학금 신청 시 신청시스템 내에서 작성

□ 제출서류

○ (필수) 부채증명원*, 채무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참고1)**, 채무자 신분증 사본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크레딧 누리집(www.oncredit.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서 발급 가능(참고2)

** 채무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 (선택)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선정에 필요한 서류로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필수 제출 아님), 복지포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발급 가능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참고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양식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한국자산관리공사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가구원으로서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거래정보(채무, 상환내역 등)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조회 목적	■ 채무자의 성실 상환 여부 확인
제공·조회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거래정보(채무, 상환내역 등)
제공·조회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첨부 : 본인 신분증 사본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선정·지급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 2

부채증명원 발급신청 직접 방문(지역본부) 위치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위치 안내 >

지 역 본 부 명	위 치
서울동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퍼스타워
서울서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퍼스타워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부전동 91-5) 동아빌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33 (원천동 567)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 (농성동)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서구 한밭대로 797 캠퍼스타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덕산동 110) 삼성생명빌딩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12 (구월동 1131)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덕진동1가)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중앙동)
강원지역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51 (옥천동)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강서동 485번지)

- ※ 위 12개 지역본부 외의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실이더라도 부채증명원 발급 안내 및 신청 불가
- ※ 채무자 본인 직접 방문 또는 채무자로부터 발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함 (위임장 없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여도 불가)
- * 위임인(채무자)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반드시 필요
- ※ 지참 신분증은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인정**되며, 학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할 경우에는 부채증명원 발급을 신청할 수 없음

13. 한국토지주택공사

1. 사업 목적

- 임대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4백만 원(200만 원 × 52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1)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2)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① (미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인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조손 가정의 경우 계약자가 조부 또는 조모인 경우도 인정, 조손가정 여부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② (기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 인정

※ LH 임대주택여부(계약자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핸드폰번호, 신청자 거주지 주소의 LH 임대주택 해당여부 등) 기부처 최종 확인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장학금 신청자와 계약자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계약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조손 가정의 경우 제외)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가 LH 임대주택에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거주 중이어야 함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확인될 경우, 거주 중으로 간주),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푸른등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52명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동점자 처리기준 : 계약자가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대학생 본인인 경우*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이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제출서류
 - (필수)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참고)**, 계약자 신분증 사본
 -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 (선택)
 - 한부모가족 증명서(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택 1)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참고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양식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한국토지주택공사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가구원으로서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지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조회 목적	▪ 주소지의 계약자와 신청정보상 일치 여부 및 임대주택 해당 여부 확인
제공·조회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지
제공·조회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첨부 : 본인 신분증 사본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선정·지급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일자 성명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14.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 I)

1. 사업 목적

- 방송 전공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55백만 원(100만 원 × 55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이며, 방송* 전공자
 - * 신청자 학과명에 ‘방송’ 또는 ‘미디어’ 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
 - ※ 푸른등대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총 55명
-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다자녀 가정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15.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 II)

1. 사업 목적

- 택배업 종사자(택배기사)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37백만 원(100만 원 × 37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 택배업*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택배기사의 자녀 중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인 자
 - * CJ대한통운, 롯데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에 소속된 택배기사
 - ** 1)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함(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퇴직 또는 휴직 상태인 경우 선발 제외)
 -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1년 이상 재직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함
 -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중 2개 사 이상의 근무 기간을 합쳐서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 시 해당 회사의 재직 정보를 모두 작성하고 근무 기간 확인될 경우 합산하여 기간 산정 가능(재직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인정)
 - ※ 신청 시 작성한 택배기사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재직여부 및 1년 이상 종사여부 확인(기부처 확인)
 - ※ 장학금 신청자와 택배기사의 가족관계는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택배기사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푸른등대 홈앤스마일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총 37명
-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다자녀 가정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 (필수) 택배기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참고),
택배기사 신분증 사본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16. DGB사회공헌재단

1. 사업 목적

- 대구·경북 지역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및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45백만 원(150만 원 × 3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소속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 *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 ** 기숙사, 전(월)세 원룸, 하숙집, 고시원 등(단,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
- ※ 푸른등대 DGB사회공헌재단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 지원인원: 30명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 신청시작일('23. 7. 4.)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만 [참고1]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발 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상세)

○ 전(월세) 주거 유형: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자로 판단

○ 기숙사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심사 사항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②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③ '23년도 2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23년 12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 필요

* 대학생 명의 등본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참고 1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신청자 인적사항

- 이 름 : 홍길동
- 소속대학 : 기부장학대학교
- 학 과 : 장학학과

○ '23-2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사항 포함)

1. 임차유형(택 1)

전(월세)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기타 ()

2. 월 주거(예상) 비용(택 1)

20만 원 미만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 학기/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3.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등)의 임차인(택 1)

-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 본인 부친 모친
-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 본인 배우자

4. 기타사항

-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00시 00구 00로(예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한국장학재단 2층 인재육성장학부)
- 임대차계약서 주소(예정포함): 00시 00구 00로(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연세빌딩 24층)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예정포함): 20XX. XX. XX. ~ 20XX. XX. XX.

※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_____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	---

참고 2

하숙집 · 고시원 확인서 (예시)

하숙집 · 고시원 확인서

1. 하숙집 · 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소	연락처
	590415 - 2(예시)		
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소	연락처
	920319 - 1(예시)		
3. 하숙(입실) 현황			
하숙(입실)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하숙비(입실료)	월금 총 원	숙박비(입실료)	월금 원
		식대	월금 원
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 · 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하숙집 · 고시원 주인) 주소 :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비고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참고 3

기숙사 입주확인서 (예시)

(제20 - 호)

○○○○○기숙사
입 주 확 인 서

성 명		학 교 명	
호 실	관 호	연 락 처	

상기 학생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기숙사에 거주함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기숙사 관장 (직인)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17. KOSAF기부펀드(유형 I)

1. 사업 목적

-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KOSAF기부펀드의 재원은 기부장학금 명칭이 별도 부여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사업 종료 후 잔액 포함)의 기부금으로 조성됨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60백만 원(200만 원 × 40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졸업학기자 제외)
- 신청자격: 가정 외 보호시설* 보호종결 또는 연장보호 중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2구간 이하인 자
 -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 지원인원: 4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3년 2학기 ~ '24년 1학기)
- 평가기준
 - (1차)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2배수 선발
 - (2차) 자기소개서(100점)
 - ※ 심사위원: 한국장학재단 추천 2인 심사(내부 또는 외부)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 동점자 처리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제출서류: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
 - *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택 1)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

18. KOSAF기부펀드(유형 II)

1. 사업 목적

- KOSAF기부펀드의 기부금을 활용한 대학생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KOSAF기부펀드의 재원은 기부장학금 명칭이 별도 부여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사업 종료 후 잔액 포함)의 기부금으로 조성됨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50백만 원(150만 원 × 10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소속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 ** 기숙사, 전(월)세 원룸, 하숙집, 고시원 등단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
 - ※ KOSAF기부펀드II유형 기수혜자 제외(재단 확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100명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평가 점수 높은 순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 단, 신청시작일('23. 7. 4.)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만 [참고2]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발 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상세)

○ 전(월세) 주거 유형: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자로 판단

○ 기숙사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심사 사항

-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 ②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 ③ '23년도 2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23년 12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필요

*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

참고 1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신청자 인적사항

- 이 름 : 홍길동
- 소속대학 : 기부장학대학교
- 학 과 : 장학학과

○ '23-2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사항 포함)

1. 임차유형(택 1)

- 전(월세)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기타 ()

2. 월 주거(예상) 비용(택 1)

- 20만 원 미만 2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 학기/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3.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등)의 임차인(택 1)

-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 본인 부친 모친
-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 본인 배우자

4. 기타사항

-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00시 00구 00로(예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한국장학재단 2층 인재육성장학부)
- 임대차계약서 주소(예정포함): 00시 00구 00로(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연세빌딩 24층)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예정포함): 20xx. xx. xx. ~ 20xx. xx. xx.

※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_____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참고 2

하숙집 · 고시원 확인서 (예시)

하숙집 · 고시원 확인서

1. 하숙집 · 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소	연락처
	590415 - 2(예시)		
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소	연락처
	920319 - 1(예시)		
3. 하숙(입실) 현황			
하숙(입실)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하숙비(입실료)	월금 총 원	숙박비(입실료)	월금 원
		식대	월금 원
<p>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 · 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확인자 (하숙집 · 고시원 주인)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p>			
비고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참고 3

기숙사 입주확인서 (예시)

(제20 - 호)

○○○○○기숙사
입 주 확 인 서

성 명		학 교 명	
호 실	관 호	연 락 처	

상기 학생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기숙사에 거주함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기숙사 관장 (직인)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참고

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

기부처	제출서류	
1. 건설근로자공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서류 없음 ※ 장학금 신청자와 근로자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 (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공수 김용호	해당자	<p>■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탈북 가정(새터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가정 외 보호출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정, 기혼자 제외 ● 학생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대학생(기혼자 제외) ● 다문화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p>※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 (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p>
3. 국민건강보험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11월 중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가능한 자(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강원도 원주 소재)에서 진행 예정) ※ 기부처 사정에 따라 수여식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심사 결과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장학증서 수여식 불참하는 경우, 2024년 1학기 계속 지원 탈락할 수 있음 	

<p>4. 국민연금공단</p>	<p>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수급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마감일 기준 지급내역 있는 경우, 수급자 인정 가능 ※ 장학금 신청자와 수급자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수급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팩스·우편) 등을 통해서 발급 가능, 연금수급증서 등의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함 												
<p>5.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p>	<p>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사실확인서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재난지역 및 기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경북·강원 산불</th> <th>중부권 집중호우</th> <th>태풍 힌남노</th> <th>2022년 폭설</th> <th>2023년 산불</th> </tr> </thead> <tbody> <tr> <td>재난기간</td> <td>'22.3월</td> <td>'22.8월</td> <td>'22.9월</td> <td>'22.12월</td> <td>'23.4월</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을 방문하여 발급하며, 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됨 ※ 장학금 신청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피해사실확인서 상 <u>피해자</u>가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또는 본인이어야 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구분	경북·강원 산불	중부권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	2022년 폭설	2023년 산불	재난기간	'22.3월	'22.8월	'22.9월	'22.12월	'23.4월
구분	경북·강원 산불	중부권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	2022년 폭설	2023년 산불									
재난기간	'22.3월	'22.8월	'22.9월	'22.12월	'23.4월									
<p>6. 연암장학회</p>	<p>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서류제출 필요 없음 ●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탈북 가정(새터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가정 외 보호출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정, 기혼자 제외 ● 학생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대학생(기혼자 제외) ● 다문화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p> <p>※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 (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p>
<p>7. 우미희망재단</p>	<p>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주거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입주로 판단 - 기숙사 주거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실확인서*** 1부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p>*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p> <p>**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p> <p>***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p> <p>※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 (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시작일('23. 7. 4.)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만 제출 ※ 선발 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 (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p>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탈북 가정(새터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

8. 유지웅 기부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없음 	
9. 한국가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없음 	
10. 한국교직원공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없음 	
11.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달서비스에서 발급,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산업재해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제출) ※ 장학금 신청자와 근로자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 (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재해 사망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산정 가구원 포함 불필요)
12. 한국 자산관리공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증명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크레딧 누리집(www.oncredit.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서 발급 가능 • 채무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채무자 신분증 사본 - 채무자가 <u>장학금 신청자 본인인</u> 경우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선정에 필요한 서류로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필수 제출 아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발급 가능
13. 한국 토지주택공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서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 계약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계약자 신분증 사본 - 계약자가 <u>장학금 신청자 본인인</u> 경우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증명서(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가정 외 보호출신 -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14. 홈앤쇼핑 홈앤 스마일(유형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없음
15. 홈앤쇼핑 홈앤 스마일(유형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기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택배기사 신분증 사본 ※ 장학금 신청자와 택배기사의 가족관계는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택배기사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6. DGB 사회공헌재단	<p>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주거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입주로 판단 - 기숙사 주거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실확인서*** 1부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 (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시작일('23. 7. 4.)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만 제출 ※ 선발 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 (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17. KOSAF 기부펀드 유형 I	<p>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18. KOSAF 기부펀드 유형 II	<p>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주거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입주로 판단 - 기숙사 주거 유형

- 입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 입실확인서^{***} 1부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 (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 신청 시작일('23. 7. 4.)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만 제출
 - ※ 선발 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 (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 기부처별 제출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처 직인, 페이지 전체, 신청 시작일(2023. 7. 4.)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2023. 6. 4. ~ 7. 20.) 발급일이 확인되는 출력 및 스캔본만 인정(컴퓨터·모바일 화면 캡처본 인정 불가)
- ※ 장학금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심사함

2023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안)

2023. 6.

인 재 육 성 장 학 부



【 '23-2학기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

구분	'23-1학기(기존)	'23-2학기(변경)
<p>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명시 (p. 69)</p>	<p>< 신설 ></p>	<p>(p. 69)</p> <p>○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 생활비 지원 유형은 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수혜 가능하며, 등록금 지원유형은 타 등록금성 장학금 포함 당해학기 총 등록금 범위 안에서만 수혜 가능</p> <p>⇒ (변경 취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의 타 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여부에 대해 지원유형별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신청 학생의 혼동 방지</p>

'23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I 사업 개요

1. 목적

- 기부자의 숭고한 기부 취지를 반영한 장학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 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2.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및 제20조(기부금의 모집접수)
- 「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칙」 제15조(기부금품 운영위원회)

① 기부금품 제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기부금품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품 활용 사업 계획

3. 추진 일정(안)

업무내용	일정
보도자료 배포 등 선발 공고	'23. 6. 30.(금) ~ 7. 3.(월)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23. 7. 4.(화) ~ 7. 20.(목)
심사자료 준비 (학사정보 입력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23. 7. 21.(금) ~ 9. 14.(목)
장학생 심사	'23. 9. 15.(금) ~ 10월 중순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23. 10월 중순

※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심사 기준일: 심사 시작일(9월 15일)

*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II 공통 선발 기준

1. 학생 신청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3. 7. 4.(화) 09:00 ~ '23. 7. 20.(목) 18:00

※ 신청 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누리집에 서류 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확인 경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현황

- (가구원 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만 인정, 등록금을 이연한 경우에도 이전 학자금 지원구간 사용 불가

○ 기부처별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

2. 대학 추천

□ 대학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이수 학점, 성적, 학적 등을 반영한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제공 (대학 관리자포털에서 처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 대학 학사·수납정보 등록 기간 내(심사 이전) 등록 완료
 - ※ 학사정보, 학적상태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 시작일 기준 대학에서 업로드한 정보로 심사진행

□ 정보 제공방식

-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을 각각 대학 관리자포털 내 [학사정보관리]와 [수납원장관리]에서 등록
-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수정은 심사 이전 단계까지만 가능

3. 대상자 선정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적용

-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장학생 선발 심사 시작일 기준으로 확인된 학자금 지원구간을 심사 시 적용
- ※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 ※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시작 기준일 이후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반영 불가

□ 장학생 심사

- 적격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 성적 및 기부처별 심사(자기 소개서 등) 등을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등록금/생활비 지원 구분 없이 동일 학기에 1개 유형만 신청 가능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 생활비 지원유형은 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수혜 가능하며, 등록금 지원유형은 타 등록금성 장학금 포함 당해학기 총 등록금 범위 안에서만 수혜 가능
- 동일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간 중복

지원 불가(신규, 계속장학생 전체 해당)

- 1·2차 심사 완료 후, 심사기간 동안의 학적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 선발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정보를 고의 또는 실수로 미입력(재외국민 특별전형 ‘N’ 입력)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한 경우 심사 제외
-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 국내외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된 경우는 예외 처리

구 분		평가항목
1차	1단계	○ 적격여부 확인: 선발자격조건* 및 서류 확인
	2단계	○ 가계소득 평가: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성적 평가: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 100
2차		○ 기부처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심사 등 진행

- * 선발자격조건: 기부처별 신청자격, 성적, 소득수준, 이수학점, 학적상태 등 심사
- ※ 장학금 신청자와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단, 기초/차상위/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가족관계 판단 여부는 장학금 유형별 심사요건 및 기부처에 요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 등록금 지원유형의 경우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중복 지원 불가)

※ 등록금 범위: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선택경비

□ 중복지원여부 확인

- 장학생 선정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지원 사유 해소 시 장학금 지급

※ 단,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중복지원 해소 인정 및 장학금 지급 가능함

5.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유형

- 생활비 무상보조, 정액 지원

□ 장학금 지급 방식

-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6. 사후 관리

□ 장학금 반환

- 장학금 수혜 후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제적, 타 대학 편입, 재입학, 졸업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및 수혜학기가 초과학기일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 장학금 미반환 시,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할 수 있음
-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등)에 미충족될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중단
 - ※ 단, 계속장학생이 졸업학기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반환대상 금액
 -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600,000\text{원} \times 5/6 = 2,166,666\text{원}$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2,600,000\text{원} \times 2/3 = 1,733,333\text{원}$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2,600,000\text{원} \times 1/2 = 1,300,000\text{원}$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은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일부 반환의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처리* 기준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처리 가능

* 당해 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중 국고금관리법 제47조2항에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처리 가능

□ 장학금 환수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금액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른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의 중대한 질병, 사망, 사고, 지진·수해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대상에서 제외 여부 결정할 수 있음

※ 반드시 붙임 파일의 환수·반환 예외처리 신청서(사유 등 기재)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에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

※ 반환 예외자는 반환 예외 승인일 기준 1년 이내 푸른등대 장학사업 신청 불가

□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이 이의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환수 대상에서 제외 여부 결정할 수 있음

7. 자기소개서 심사

심사위원 위촉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자기소개서 심사를 위해 자기소개서 심사위원을 위촉
- 심사위원은 기부처별 평가기준을 근거로 위촉
- 위촉 세부계획은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부서장 전결로 위촉

기능

- 기부처별 사업 목적 및 평가기준을 근거로 자기소개서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
-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일 경우 등 제척사유 발생 시,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평균점으로 대체

임기

-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 사업 종료까지

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학재단 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기부처 및 재단 내부 위촉 심사위원은 대상에서 제외

8. 기타 공통사항

선발기준 우선순위

- 기부처별 선발계획에서 정한 사항이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과 상이할 경우, 기부처별 세부 기준을 우선함

발생이자 처리

- 기부장학금 대학지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자체 수입처리

- 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3.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처리 심의 신청서. 끝.

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60	57	54	51	48	45	42	39	36

○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성비 점율	상위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미만	45%이상 50%미만
점수	40	38	36	34	32	30	28	26	24	22
성비 점율	50%이상 55%미만	55%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75%미만	7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점수	20	18	16	14	12	10	8	6	4	2

□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성비 점율	상위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미만	45%이상 50%미만
점수	50	47.5	45	42.5	40	37.5	35	32.5	30	27.5
성비 점율	50%이상 55%미만	55%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75%미만	7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점수	25	22.5	20	17.5	15	12.5	10	7.5	5	2.5

□ 가계소득(30점) + 성적(70점)

○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30	27	24	21	18	15	12	9	6

○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성비 점율	상위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미만	45%이상 50%미만
점수	70	66.5	63	59.5	56	52.5	49	45.5	42	38.5
성비 점율	50%이상 55%미만	55%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75%미만	7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점수	35	31.5	28	24.5	21	17.5	14	10.5	7	3.5

□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70	67	64	61	58	55	52	49	46

○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성비 점율	상위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미만	45%이상 50%미만
점수	30	28.5	27	25.5	24	22.5	21	19.5	18	16.5
성비 점율	50%이상 55%미만	55%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75%미만	7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점수	15	13.5	12	10.5	9	7.5	6	4.5	3	1.5

□ 가계소득(100점)

○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성적(100점)

○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성비 점율	상위	5%이상	10%이상	15%이상	20%이상	25%이상	30%이상	35%이상	40%이상	45%이상
	5%미만	10%미만	15%미만	20%미만	25%미만	30%미만	35%미만	40%미만	45%미만	50%미만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성비 점율	50%이상	55%이상	60%이상	65%이상	70%이상	75%이상	80%이상	85%이상	90%이상	95%이상
	55%미만	60%미만	65%미만	70%미만	75%미만	80%미만	85%미만	90%미만	95%미만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참고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 분	종 류
<p>학자금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 학자금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p>장학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2020년 사업폐지),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2012년 사업폐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19년 사업신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 고졸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p>중복지원 예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23년 2학기 신규 지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모두 생활비 무상보조 유형으로 학자금 중복 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참고 3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대학공문 제출 필수)*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대학명	
	전화번호		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장학금 수혜현황	장학금 수혜학기	년도 학기	환수대상금액	원
----------	----------	-------	--------	---

환수예외 심의 신청사유	<p><i>(상세히 기술할 것)</i></p>
--------------	---------------------------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p>1. 증빙 서류 제출 : 환수 예외 심의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p> <p>2.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p>
-----------	--